

# 수원당수지구 A-4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기입주지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 공급대상 : A-4블록 총 610호 중 신혼희망단운(공공분양) 3세대 [전용면적 46㎡]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만19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거주지역, 소득, 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일반 당첨자로 관리)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자는 <mark>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mark>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기본형으로 시공**되었으며, <mark>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mark>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또는 교차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수원당수지구 A-4블록 610세대 중 406세대는 신혼회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금번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및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3.06.16.)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최초공고(2020.12.31.) 및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 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16.(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820020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www.lh-dangsu.co.kr)**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브랜드명은 '라 포리엘'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3.10.16.) 현재 <표1>의 자격을 갖춘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b>혼인기간</b> 이 <b>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b>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 신혼부부	<b>혼인</b> 을 계획 중이며, <b>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혼인사실</b> 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입주**가 **불가** 하며 **공급계약이 취소**된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2021.01.25.)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금회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2021.01.25.)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명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신청자격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계약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 변동일 포함 발급)을 계약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에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 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회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청약 접수	<b>당첨자</b> (예비자) <b>발표</b>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23.10.16.(월)	'23.10.23.(월) 10:00 ~ 17:00	'23.10.24.(화) 14:00 이후	'23.10.27.(금) 10:00~17: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현장): LH 수원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31.)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 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 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HUG 콜센터**(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화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확인

###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   ¬	011 01.7	- =   = 11	_						
대출기간	대출	⋚ 70% 실험	행시	대결	대출 60% 실행시		대출 50% 실행시		대출 40% 실행시			대출 30% 실행시			
(년)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 선택 가능하며 다른 비율은 선택 불가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
-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79백만원) 이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의 가입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 시에는 주택 도시기금 용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신혼회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공동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계약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신청자격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A-4블록 기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합니다.

##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I

■ 수원당수지구 A-4블록(총 61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5~20층 8개동 전용면적 46㎡ 3세대(401동 502호, 401동 902호, 402동 1303호)

## 2. 공급대상

				HL-1.1		세대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					공급 세대수				-17	입주
늘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공급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면적	합계	기계약	금회공급	행복주택	1층 세대수	최고	지정
				11 0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	( m² )	답계	공공분양	공공분양	8777	. 11	0 1	기간
						합 계					610		3	204	_	20	계얀인로
_	\-4	046.0000A	46AH	확장	46.73	20.4684	6.4110	32.2422	105.8516	40.4619	95	62	1	32	-	20	"부터 60일이내
'	`	046.0000A	46AL	확장	46.68	20.4465	6.4042	32.2077	105.7384	40.4186	15	10	-	5	-	15	* "부터 60일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L		046.9600B	46B	확장	46.96	20.5691	6.4426	32.4009	106.3726	40.6610	19	11	2	6	-	20	

055,0000A	55AH	확장	55.65	24.3755	7.6348	38.3967	126.0570	48.1854	326	217	_	109	-	20	
035.0000A	55AL	확장	55.62	24.3623	7.6307	38.3760	125.9890	48.1594	102	68	_	34	-	15	
	55BH	확장	55.95	24.5069	7.6759	38.6037	126.7365	48.4452	38	24		14	-	20	
055.0000B	55BL	확장	55.94	24.5025	7.6746	38.5968	126.7139	48.4365	15	11	-	4	-	15	

- ※ 동별 최고층수 차이(15층 이하 또는 15층 초과)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각각 AH와 AL, BH와 BL로 타입이 구분됩니다. (15층 이하의 동은 AL, BL 타입, 15층 이상 20층 이하의 동은 AH, BH 타입)
- ※ 같은 주택형이라도 공급면적 차이로 인해 타입별 주택가격은 상이합니다.
-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블록명	주택형	타입	충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잔금	<b>융자금</b>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입주시	시까지	
A-4	046.0000A	46AH	5층~최상층	기본형	301,460	30,146	216,314	55,000
A-4	046.9600B	46B	5층~최상층	기본형	296,960	29,696	212,264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79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건축공정상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불가합니다.

### ■ 공간선택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금회 공급세대는 모두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블록명	주택형	선택사항	기본형	공간확장형(선택사항)	비고
	046.0000A	선택①	침실1 드레스룸/팬트리 분리	A. 드레스룸 + 팬트리 통합	
A-4	0.4.0.00000	선택①	파트기/비트 아파르 비기	A. 침실2 + 복도 알파룸 통합	
	046.9600B	선택②	팬트리/복도 알파룸 분리	<del>8. 팬트리 + 복도 알파룸 통합</del>	A, B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 추가선택품목(1) 안내

- ※ 금회 공급주택은 기본형으로 시공되어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 시 납부조건(단위:천원)			
블록	주택형	유형	선택품목	규격	합계	<b>계약금</b> (계약시)	<b>잔금</b> (입주시)	비고
		<del>시스템</del>	<del>1 거실+침실1</del>		<del>3,650</del>	<del>365</del>	<del>3,285</del>	11, 21 중 하나만 선택가능
		에어컨	2 거실+침실1+침실2		<del>5,070</del>	<del>507</del>	<del>4,563</del>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설치
		주방기전	③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del>가스1+하이라이트2</del>	<del>570</del>	<del>57</del>	<del>513</del>	3, <b>4</b> 중 하나만 선택 가능
		구강기안	4 전기 하이브라드 쿡탑	하이라이트1+인덕션2	<del>630</del>	<del>63</del>	<del>567</del>	미선택 시 가스쿡탑 설치
		바닥재	5 기능성 륨카펫	두洲 6mm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설치
		<del>주방가구</del>	<del>6 주방 키큰 수납장</del>		<del>717</del>	<del>71</del>	<del>646</del>	미선택 시 김치냉장고장 설치
	046.0000A		7 (침실1) 드레스룸		1,366	136	<del>1,230</del>	공간선택 A 선택 시 선택 불가 시스템 선반, 벽체, 문 구성
A-4			8 (침실1) 대형드레스룸		1,111	111	1,000	공 <del>간선택 A 선택 시만 가능</del> <del>시스템 선반, 화장대 구성</del>
		가구	② (침실1) 붙박이장		<del>2,275</del>	<del>227</del>	<del>2,048</del>	
			110 (침실1) 붙박이장 + 화장대		<del>2,782</del>	<del>278</del>	<del>2,504</del>	
			₩ (참실2) 붙박이장		<del>1,630</del>	<del>163</del>	<del>1,467</del>	
			12 팬트리 시스템 선반			<del>무상 제공</del>		기본 설치, 마설치 희망시 '마설치' 선택
	046.9600B	<del>시스템</del> 에어컨	<del>■ 거실+침실1</del>		4,020	402	3,618	1.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설치

					선택	시 납부조건(단위	위:천원)	
블록	주택형	유형	선택품목	규격	합계	<b>계약금</b> (계약시)	<b>잔금</b> (입주시)	비고
			2 거실+침실1+침실2		<del>6,180</del>	618	<del>5,562</del>	
		주방가전	3 가스 하이브라드 쿡탑	<del>가스1+하이라이트2</del>	<del>570</del>	<del>57</del>	<del>513</del>	<b>3, 4 중 하나만 선택 가능</b> 미선택 시 가스쿡탑 설치
		구강기안	4 전기 하이브라드 쿡탑	<del>하이라이트1+인덕션2</del>	<del>630</del>	<del>63</del>	<del>567</del>	미선택 시 가스쿡탑 설치
		바닥재	5 기능성 륨카펫	두洲 6mm		<del>무상 제공</del>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설치
		주방가구	6 김치냉장고장+주방키큰수납장		1,088	108	980	
		구강기구	<mark>7</mark> 주방 키큰 수납장		<del>1,220</del>	<del>122</del>	1,098	
			8 (침실1) <u>드레스룸</u>		1,509	<del>150</del>	<del>1,359</del>	<del>시스템선반, 벽체, 문 구성</del>
			<b>⑨</b> (침실1) 붙박이장─		<del>2,275</del>	<del>227</del>	2,048	
			₩ (침실1) 붙박이장+화장대		<del>2,782</del>	<del>278</del>	2,504	
		<del>기구</del>	<del>11 (침실2) 붙박이장</del>		<del>1,435</del>	143	1,292	
			12 (침실2) <u>드레스룸</u>		1,276	127	1,149	<del>공간선택 A 선택 시만 가능</del> 사스템 선반, 벽체, 문 구성
			13 팬트리 시스템 선반			무상 제공		기본 설치 <del>, 미설치 희망시 '미설치'선택</del>
			₩ 대형팬트리 시스템 선반		<del>761</del>	<del>76</del>	<del>685</del>	공 <del>간선택 B 선택 시만 가능</del>

### ■ 추가선택품목(2) 안내 : 발코니 확장

-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	확장 금액				실별 구	분 가격				납부방식	
블록명	주택형	타입	내역	Я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드레스룸	욕실	<b>계약금</b> (계약시)	<b>잔금</b> (입주시)
			기본공사비(A)	52,282	583	13,385	-	16,086	12,950	9,278	-		
	046.0000A	46AH	확장공사비(B)	59,176	1,337	14,438	_	17,113	16,439	9,849	-		
l			계약자부담액(B-A)	6,894	754	1,053	-	1,027	3,489	571	-	1,000	5,894
A-4			기본공사비(A)	55,947	583	11,449	-	23,213	20,702	-	-		
	046.9600B	46B	확장공사비(B)	62,467	1,337	12,339	_	24,525	24,266	_	-		
			계약자부담액(B-A)	6,520	754	890	-	1,312	3,564	-	-	1,000	5,520

##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기준 (무주택 등)

##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3.10.24.)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공급신청 자격자

 $\Pi$ 

-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1세대 1주택)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예비신혼부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가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신혼화망타운의 계약자는 <u>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u>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 유의사항

 ${
m I\hspace{-.1em}I\hspace{-.1em}I}$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청약 시 입력한 '에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 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번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4. 입주자 선정방법

#### ■ 동ㆍ호 추첨

IV

V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신청자격별·동별·층별·타입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신청 시 확인사항(전매제한, 주택매입)

■ 전매제한 및 주택매입에 대한 안내는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2.31.) 및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문('23.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	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3.10.23.(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공급블록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총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역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10.23.(월) 오후 7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Ⅵ││ 신청방법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u>www.lh.or.kr</u>)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사)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신호회망타운

니너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 선택 → 블록선택 → 신청유형(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3.10.23.(월) 10:00 ~ 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순번을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 기 바라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VII

## 추첨, 계약시 구비서류

##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등)

- 추첨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10:3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및 당첨자의 동·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신청**(연락처 031-250-81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3명** (청약신청자 본인)으로 한정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시 구비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Л	약서류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계약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본인	* 주택공급금액 10% + 선택사양품목금액 10%, 옵션 선택에 따른 계	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계약시	②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1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71071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계약 시	① 위임장 (공고 시 첨부)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추가서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b>본인발급용</b> 에 한함) 및 인감도장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 도장(인감 도장 외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1)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 주소변동시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 센터
(3)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 센터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행정복지 센터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 센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공사가 제공하는 해당 동의서 양식을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	나청약플러 스

				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7)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류로 임신진단서만 제출가능(임신확인서 제출불가)	해당 병원
(8)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입앙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 센터
(9)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이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계약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LH청약플러 스
(10)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 한부모기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복지 센터
(11)	예비신혼부부확인서	해당자	본인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한 자로, 혼인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LH청약플러 스

## VIII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23.10.23)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모든 선택품목 금액 포함)의 10퍼센트]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1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리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 단지 내부여건(공통)
- 추가계약(분양) 세대의 AI 스피커는 SKT제품으로 제공되며, 사용 시 음성제어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 (타사 AI 스피커 이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A-4블록)
- 발코니2에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시 시스템선반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구여건 및 단지여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2.31.) 및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문('23.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b>사업주체</b> (사업자등록번호)	<b>시공업체</b> (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계룡건설산업(주)(314-81-07954)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5. 서류제출, 계약장소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분양문의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원당수 A-4블록 상담전용: 031-250-8181 (평일 10:00 ~ 17:00) 1골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이버모델하우스: [PC] www.lh-dangsu.co.kr

버 스 : 자목마을입구/ 호매실쌍용아파트 하차

- 일반버스 : 7, 9, 9-1, 11-1, 13, 13-1, 13-4, 13-5, 15-1, 19, 61, 62-1,99, 123A, 123D · 광역직행 : 7800, 80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6.



